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 획 예 산 과 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 화 : 2094-0593



제2812호

2026. 8. 13.

고 시

제2026-92호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1
제2026-94호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제2026-95호	도로명주소 고시	 28

공 고

제2026-1154호	도시계획시설[면목7구역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29
제2026-1161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2026-1162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9
제2026-1163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제2026-1170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제2026-1171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제2026-1173호	도시계획시설(봉화산근린공원)사업 완료 공고	 43
제2026-1174호	도시계획시설(용마산근린공원)사업 완료 공고	 46
제2026-1176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제2026-1177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제2026-1180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제2026-1183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2
제2026-1184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제2026-1189호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54

제2026-1192호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57
제2026-1193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0
제2026-1194호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1
제2026-1195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4
제2026-1196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제2026-1198호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66
제2026-1203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제2026-1207호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593 / FAX: 490-4341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92호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3-28번지 일대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8. 1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3-28번지 일대
- 나. 면 적 : 19,795.80m²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31, 702호

5.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 조서

사업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후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본동 63-28번지 일대	9,515.20m ²	19,795.80m ²

- 나. 결정(변경) 사유: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거 사업시행구역 변경

다.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94호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호(2024.01.1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25-52호(2025.05.29.),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26-32호(2026.03.2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I.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58,400.9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8,400.9	-	58,400.9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7,820.5	증) 15.0	7,835.5	13.4	-
	도 로	1,960.5	-	1,960.5	3.4	-
	근린공원	2,600.0	-	2,600.0	4.4	체육시설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1,930.0	증) 15.0	1,945.0	3.3	-
	공공청사(파출소)	330.0	-	330.0	0.6	-
	사회복지시설	1,000.0	-	1,000.0	1.7	-
획지	소 계	50,580.4	감) 15.0	50,565.4	86.6	-
	획 지	50,580.4	감) 15.0	50,565.4	86.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8,400.9	-	58,400.9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386.6	증) 15.0	7,401.6	12.7	-
제2종일반주거지역	433.9	-	433.9	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580.4	감) 15.0	50,565.4	86.6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변경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 변경

구분	항목		금액(만원)		비고
			기정	변경	
수입	합계		118,086,880	123,755,624	-
	분양 주택	소유자	51,474,054	53,119,350	625세대
		일반	57,923,411	59,473,300	600세대
	공공 임대	재개발 의무	3,273,770	7,125,310	201세대
		국민주택 규모주택	1,348,894	1,483,336	89세대
	기타 시설	판매시설	4,342,307	2,856,000	-
	매출부가세		-275,556	-301,672	-
지출	소계		81,244,012	86,811,916	-
	공사비		61,248,315	64,102,192	-
	보상비		6,158,026	7,425,487	-
	관리비		1,324,728	587,910	-
	설계비		502,000	534,589	-
	감리비		1,617,366	1,209,208	-
	부대경비		6,537,151	9,275,893	-
	예비비		3,856,426	3,676,638	-
종전자산 추산액			31,727,441	31,727,441	-
추정비례율			116.12%	116.44%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 변경

- 기정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만원/3.3㎡)	693	732	770	809	847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10%	3,522만원/3.3㎡	157.39	147.74	138.08	128.43	118.78
	5%	3,201만원/3.3㎡	146.41	136.76	127.10	117.45	107.80
	0% (기준)	3,049만원/3.3㎡	135.43	126.08	116.12	106.47	96.82
	-5%	2,897만원/3.3㎡	124.45	114.80	105.14	95.49	85.84
	-10%	2,607만원/3.3㎡	113.47	103.82	94.16	84.51	74.86

- 변경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만원/3.3㎡)	693	732	770	809	847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10%	3,800만원/3.3㎡	174.88	165.16	155.44	145.72	136.00
	5%	3,600만원/3.3㎡	155.38	145.66	135.94	126.22	116.50
	0% (기준)	3,414만원/3.3㎡	135.87	126.15	116.44	106.72	97.00
	-5%	3,200만원/3.3㎡	116.37	106.65	96.93	87.21	77.50
	-10%	3,100만원/3.3㎡	96.87	87.15	77.43	67.71	57.99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A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1	면목동 70-70	면목동 69-46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기정	소로	1	A	6~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5	면목동 69-46	면목동 68-7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근린공원	면목동 69-125 일대	2,600.0	-	2,600.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체육시설 중복결정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면목동 70-108 일대	1,930.0	증) 15.0	1,945.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어린이공원	• 면적 증가 - 1,930.0㎡ → 1,945.0㎡ (증 15.0㎡)	• 세대수 계획 조정에 따른 세대수 기준 공원 면적 산정결과가 변경되어 공원계획 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 청사	청사	면목동 71-24	330.0	-	330.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면목본동 파출소

2)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체육 시설	-	면목동 69-125 일대	2,600.0	-	2,600.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근린공원 지하 중복결정

3)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사회 복지 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면목동 69-100 일대	1,000.0	-	1,000.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		계획면적(㎡)	비고
				기준	면적(㎡)		
기정	주민공동시설	소계	-	1,000세대 이상 (500.0㎡+1,510세대×2.0)×1.25	4,400.0	6,456.98	-
		경로당	획지1	1,500~2,000세대 미만	725.0	725.98	지상
		어린이집		1,500~2,000세대 미만	725.0	725.41	지상
		작은도서관		1,500~2,000세대 미만	298.0	485.70	지하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복지법 기준	66.0	88.75	지상
		주민운동시설(실외)		-	-	525.83	실외
		어린이놀이터		1,000세대 이상 500.0㎡+(1,510세대×0.7)	1,557.0	1,577.03	실외
		기타공동시설		-	-	2,328.28	지하/지상
	관리사무소		획지1	50세대 이상 10㎡+(1,510세대-50세대)×0.05㎡	83.0	321.37	지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		계획면적(㎡)	비고
				기준	면적(㎡)		
변경	주민공동시설	소계	-	1,000세대 이상 (500.0㎡+1,515세대×2.0)×1.25	4,412.5	7,525.61	-
		경로당	획지1	1,500~2,000세대 미만	725.0	728.90	지상
		어린이집		1,500~2,000세대 미만	725.0	728.28	지상
		작은도서관		1,500~2,000세대 미만	298.0	500.08	지하
		주민운동시설(실외)		-	-	525.92	실외
		어린이놀이터		1,000세대 이상 500.0㎡+(1,515세대×0.7)	1,560.5	1,582.55	실외
		기타공동시설		-	-	3,459.88	지하/지상
	관리사무소		획지1	50세대 이상 10㎡+(1,515세대-50세대)×0.05㎡	83.25	405.73	지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및 별표1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58,400.9	획지	50,580.4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321	-	-	321	-
변경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58,400.9	획지	50,565.4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321	-	-	321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건축계획)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건축계획)																							
기정	면목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58,400.9	획지1	50,580.4	면목동 69-1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50% 이하 (19.55%)	265.21 이하	300.00 이하 (299.92%)	120m 이하 (35층 이하/ 해발고도 149m 이하)																						
			획지2	2,600.0	면목동 69-125일대	체육시설	2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획지3	1,000.0	면목동 69-100일대	사회 복지시설	60% 이하																									
			획지4	330.0	면목동 71-24	공공청사 (파출소)	60% 이하																									
			• 총 세대수 : 1,510세대 (분양 1,217세대, 임대 293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tr><th colspan="2">건립규모</th><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r><tr><td colspan="2">합 계</td><td>1,510</td><td>100.0</td></tr><tr><td rowspan="2">60㎡이하</td><td>40㎡이하</td><td>164</td><td>10.9</td></tr><tr><td>50㎡~60㎡</td><td>634</td><td>42.0</td></tr><tr><td colspan="2">60㎡~85㎡</td><td>622</td><td>41.2</td></tr><tr><td colspan="2">85㎡초과</td><td>90</td><td>5.9</td></tr></table>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0% 이상 = 85㎡ 이하 ÷ 전체세대수 = 1,420 ÷ 1,510 = 94.0%(충족) • 임대주택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재개발 임대주택 ÷ 법적상한 제외 세대 = 199 ÷ (1,510 - 188) = 15.05%(충족)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 40㎡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 재개발 임대주택 = 72 ÷ 199 = 36.2%(충족)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1,510	100.0	60㎡이하	40㎡이하	164	10.9	50㎡~60㎡	634	42.0	60㎡~85㎡		622	41.2	85㎡초과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1,510	100.0																													
60㎡이하	40㎡이하	164	10.9																													
	50㎡~60㎡	634	42.0																													
60㎡~85㎡		622	41.2																													
85㎡초과		90	5.9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table><tr><th>구분</th><th>건축선 지정 내용</th><th>비고</th></tr><tr><td rowspan="2">사업부지</td><td>상봉로 변 폭 3~5m 이상</td><td rowspan="2">도면참고</td></tr><tr><td>그 외 도로 변 3m 이상</td></tr></table>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사업부지	상봉로 변 폭 3~5m 이상	도면참고	그 외 도로 변 3m 이상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사업부지	상봉로 변 폭 3~5m 이상	도면참고																														
	그 외 도로 변 3m 이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상봉로에서 면목로72길까지 연결되는 폭 8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지정																																
심의 완화 사항																																
• 용도지역 상향 : 제2종(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 건축계획용적률 299.92%(법적상한 용적률 (300.00%) - 상한용적률(265.21%)) = 34.71%의 50%인 17.36%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건축계획)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건축계획)	
변경	면목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58,400.9	획지1	50,565.4	면목동 69-1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50% 이하 (19.62%)	266.09 이하	300.00 이하 (299.97%)	120m 이하 (35층 이하/ 해발고도 149m 이하)
			획지2	2,600.0	면목동 69-125일대	체육시설	2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획지3	1,000.0	면목동 69-100일대	사회 복지시설	60% 이하			
			획지4	330.0	면목동 71-24	공공청사 (파출소)	6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총 세대수 : 1,515세대 (분양 1,225세대, 임대 290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1,515			100.0					
60㎡이하	40㎡이하	170			11.2					
	50㎡~60㎡	737			48.6					
60㎡~85㎡		557			36.8					
85㎡초과		51			3.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0% 이상 = 85㎡ 이하 ÷ 전체세대수 = 1,464 ÷ 1,515 = 96.6%(충족) • 임대주택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재개발 임대주택 ÷ 법적상한 제외 세대 = 201 ÷ (1,515 - 178) = 15.03%(충족)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 40㎡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 재개발 임대주택 = 81 ÷ 201 = 40.3%(충족)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건축한계선 지정 -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사업부지	상봉로 변 폭 3~5m 이상				도면참고			
			그 외 도로 변 3m 이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상봉로에서 면목로72길까지 연결되는 폭 8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지정								
		• 용도지역 상향 : 제2종(7층이하)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 건축계획용적률 299.97%(법적상한 용적률 (300.00%) - 상한용적률(266.09%)) = 33.88%의 50%인 16.94%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심의 완화 사항										

나. 용적률 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용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 등 환산부지면적
	58,400.9㎡	50,580.4㎡	7,820.5㎡	709.4㎡	5,651.1㎡	3,761.9㎡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 외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7,820.5㎡ - 709.4㎡ - 5,651.1㎡ + 3,761.9㎡ = 5,221.9㎡					
신설 정비기반 시설 + 공공시설 등	토지면적	• 7,820.5㎡ - 토지(도로 및 공원) : 6,490.5㎡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 1,330.0㎡				
	환산부지 면적	•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구분	표준건축비(원/㎡)	시설 연면적(㎡)	부지가액(원/㎡)	환산부지 면적
		체육시설	3,956,364	2,600.0	2,859,515	1,798.65㎡
사회복지시설		3,963,636	2,450.0	2,859,515	1,698.00㎡	
공공청사	3,033,636	500.0	2,859,515	265.22㎡		
		※ 공공시설 등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환산 ※ 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결정 후 공공기여에 따른 부지면적을 환산하여 재산정 후 반영				
계획 용적률	기준 용적률	• 210.0%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소형주택 추가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20%) 적용				
	허용 용적률	• 246.4%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 x 사업성 보정계수) = 210.0% + (20% x 1.82) = 246.4%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 265.21% (246.4%(허용용적률) + 18.81%(기부채납 완화량) = 265.21%) • 기부채납 완화량 산정근거 = 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210.0% × (1 + (1.3×1.0×0.0289) + (0.7×0.0744)) = 228.81% 이하 = 228.81% - 210%(인센티브 및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전 허용용적률) = 18.81%				- α(토지)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460.0㎡ / 50,580.4㎡ = 0.0289 - α(건축물) =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761.9㎡ / 50,580.4㎡ = 0.0744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210% / 210%	
법적상한 용적률	• 300.0%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동주택)으로 건설 (건축계획용적률 : 299.92%)				•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 변경

구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용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 등 환산부지면적
	58,400.9㎡	50,565.4㎡	7,835.5㎡	709.4㎡	5,651.1㎡	4,031.4㎡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 외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7,835.5㎡ - 709.4㎡ - 5,651.1㎡ + 4,031.4㎡ = 5,506.4㎡					
신설 정비기반 시설 + 공공시설 등	토지면적	• 7,835.5㎡ - 토지(도로 및 공원) : 6,505.5㎡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 1,330.0㎡				
	환산부지 면적	• 환산부지 면적 = 표준건축비(원/㎡) ×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구분	표준건축비(원/㎡)	시설 연면적(㎡)	부지가액(원/㎡)	환산부지 면적
		체육시설	3,956,364	2,600.0	5,719,030	1,798.65㎡
		사회복지시설	3,963,636	2,450.0	5,719,030	1,698.00㎡
		공공청사	3,033,636	500.0	5,719,030	265.22㎡
수도시설 (상·하수도)	조성비용 : 1,774,083,359원			6,581,146	269.5㎡	
※ 공공시설 등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환산 ※ 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결정 후 공공기여에 따른 부지면적을 환산하여 재산정 후 반영 ※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부지가액 오기 정정(※환산부지 면적 변경사항 없음)						
계획 용적률	기준 용적률	• 210.0%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소형주택 추가 건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20%) 적용				
	허용 용적률	• 246.4%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 x 사업성 보정계수) = 210.0% + (20% x 1.82) = 246.4%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 266.09% (246.4%(허용용적률) + 19.69%(기부채납 완화량) = 266.09%) • 기부채납 완화량 산정근거 = 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210.0% × (1 + (1.3×1.0×0.0292) + (0.7×0.0797)) = 229.69% 이하 = 229.69% - 210%(인센티브 및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전 허용용적률) = 19.69%				- α(토지)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475.0㎡ / 50,565.4㎡ = 0.0292 - α(건축물)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순부담면적) /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31.4㎡ / 50,565.4㎡ = 0.0797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210% / 210%	
법적상한 용적률	• 300.0%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 주택(공동주택)으로 건설 (건축계획용적률 : 299.97%)				•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1) 계획용적률에 관한 사항

가)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 변경없음

기준용적률	항목	인센티브	적용 여부	기준용적률(완화)
190%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최대 10%	10%	210%
	40~50㎡ 이하 분양주택 공급	최대 15%	해당없음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최대 10%	10%	
인센티브 적용 계		20%		최대 20% 이내

※ 40㎡ 이하 : $56.94\text{㎡}(\text{전용}39\text{㎡}) \times 89\text{세대} / 50,565.4 = 10.02\%$

※ 50~60㎡ 이하 : $87.72\text{㎡}(\text{전용}59\text{㎡}) \times 551\text{세대} / 50,565.4 = 95.58\%$

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 변경없음

기준 용적률	항 목			인센티브	적용 여부	허용용적률
210%	보행 중심 생활 공간 조성	공공 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10%	적용 (5.87%)	230%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지형도면고시)	5%	적용 (5%)	
	세대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5%	-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5%	-	
		고령 서비스시설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5%	-	
		충간소음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5%	-	
	환경 친화 안전한 주거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인증 녹색건축 인증	15%	-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 및 장수명주택 인증	10~15%	적용 (10%)	
		수변친화	수변공간과 적극적 연계를 통한 수변친화 생활환경 조성	5%	-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5%	-	
기타	역사문화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재현) 등	3%	-		
	지역특화	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간대개조	5%	-		
인센티브 적용 계				20.87%(20% 적용)	최대 20% 이내	

※ 공공보행통로 : $190.0\% \times (1,562.9\text{㎡}/50,565.4\text{㎡}) = 5.87\%$

2) 사업성 보정계수

구 분	대상지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평균 공시지가	3,290,708원/㎡	5,969,319원/㎡	1.82
계산식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 1.82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 변경

- 기정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 물량에서 제외 (도정법 제97조)		
산출근거	• 전체 세대 수 : 1,322세대 {1,510 - 188(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재개발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199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 {1,510 - 188(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이상 : 1,322세대 x 15% = 198.3세대 ∴ 199세대 계획 > 198.3세대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계획: 72세대 -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 199 x 30% = 59.7세대 - 1,510세대의 5% 이상 : 1,510 x 5% = 75.5세대 ∴ 72세대 계획 > 59.7세대 또는 75.5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199	13.2	100.0
전용 39.9㎡	72	4.8	36.2
전용 59.9㎡	127	8.4	63.8

－ 변경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 물량에서 제외 (도정법 제97조)		
산출근거	- 전체 세대 수 : 1,337세대 {1,515 - 178(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재개발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201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 {1,515 - 178(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이상 : 1,337세대 x 15% = 200.55세대 ∴ 201세대 계획 > 200.55세대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계획: 81세대 -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 201 x 30% = 60.3세대 1,515세대의 5% 이상 : 1,515 x 5% = 75.75세대 ∴ 81세대 계획 > 60.3세대 또는 75.75세대		
건립규모	세대 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201	13.3	100.0
전용 39.9㎡	81	5.3	40.3
전용 59.9㎡	120	8.0	59.7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 299.92%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65.21%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92% - 265.21% = 34.71%			
	증가된 용적률의 50%	34.71% x 0.5 = 17.36% 50,580.4 x 0.1736 = 8,780.80㎡			
	의무 연면적	• 8,780.8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 수	연면적
		59A㎡	85.50㎡	41	3,505.5㎡
		59C㎡	86.06㎡	30	2,581.8㎡
		84D㎡	119.86㎡	23	2,756.55㎡
		합계		94	8,843.85㎡
					≥ 8,780.80㎡

※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참고

－ 변경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 299.97%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66.09%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97% - 266.09% = 33.88%				
	증가된 용적률의 50%	33.88% x 0.5 = 16.94% 50,565.4 x 0.1694 = 8,565.78㎡				
	의무 연면적	• 8,565.78㎡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 수	연면적	비고
		59A㎡	87.72㎡	36	3,157.92㎡	획지1
		59C㎡	88.72㎡	30	2,661.60㎡	
		84D㎡	122.73㎡	23	2,822.79㎡	
		합계		89	8,642.31㎡	≥ 8,565.78㎡

※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참고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현황	증감	계획
기정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조합	666세대	증) 844세대	1,510세대
변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조합	666세대	증) 849세대	1,515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58,400.9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8,400.9	-	58,400.9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386.6	증) 15.0	7,401.6	12.7	-
제2종일반주거지역	433.9	-	433.9	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580.4	감) 15.0	50,565.4	86.6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A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1	면목동 70-70	면목동 69-46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기정	소로	1	A	6~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5	면목동 69-46	면목동 68-7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근린공원	면목동 69-125 일대	2,600.0	-	2,600.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체육시설 중복결정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면목동 70-108 일대	1,930.0	증) 15.0	1,945.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어린이공원	• 면적 증가 - 1,930.0㎡ → 1,945.0㎡ (증 15.0㎡)	• 세대수 계획 조정에 따른 세대수 기준 공원 면적 산정결과가 변경되어 공원계획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 청사	청사	면목동 71-24	330.0	-	330.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면목본동 파출소

나)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체육 시설	-	면목동 69-125 일대	2,600.0	-	2,600.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근린공원 지하 중복결정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사회 복지 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면목동 69-100 일대	1,000.0	-	1,000.0	2024.1.11 (서울시고시 제2024-27호)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치	
변경	획지1	50,580.4	감) 15.0	50,565.4	1	면목동 69-14일대	-
기정	획지2	2,600.0	-	2,600.0	2	면목동 69-125일대	-
기정	획지3	1,000.0	-	1,000.0	3	면목동 69-100일대	-
기정	획지4	330.0	-	330.0	4	면목동 71-24	-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

가)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나) 용적률 계획 : 변경

구분	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획지1	210.0% 이하	246.4% 이하	265.21% 이하	300.0% 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246.40%
							상한용적률 265.21%
							법적상한용적률 300.00%
	획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체육시설	
	획지3					사회복지시설	
획지4	공공청사(파출소)						
변경	획지1	210.0% 이하	246.4% 이하	266.09% 이하	300.0% 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246.40%
							상한용적률 266.09%
							법적상한용적률 300.00%
	획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체육시설	
	획지3					사회복지시설	
획지4	공공청사(파출소)						

(1)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 변경없음

기준용적률	항목	인센티브	적용 여부	기준용적률(완화)
190%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최대 10%	10%	210%
	40~50㎡ 이하 분양주택 공급	최대 15%	해당없음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최대 10%	10%	
인센티브 적용 계		20%		최대 20% 이내

※ 40㎡ 이하 : $56.94\text{㎡}(\text{전용}39\text{㎡}) \times 89\text{세대} / 50,565.4 = 10.02\%$

※ 50~60㎡ 이하 : $87.72\text{㎡}(\text{전용}59\text{㎡}) \times 551\text{세대} / 50,565.4 = 95.58\%$

(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변경없음

구분	인센티브			비고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우수디자인+장수명주택	
기정	5.87%	5%	10%(우수)	20.87% 적용 (최대 20%)

(3) 사업성 보정계수 : 변경없음

구분	대상지	서울시	사업성 보정계수
평균 공시지가	3,290,708원/㎡	5,969,319원/㎡	1.82
계산식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 = 1.82		

(4) 상한용적률 완화사항 : 변경

구분	인센티브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기정	18.81%	34.71%	총 53.55%
변경	19.69%	33.88%	총 53.57%

다) 높이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 변경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 사업부지	- 영역별 다양한 형태 및 높이의 주동 배치 - 대상지 중앙 : 상징적 형태의 고층 주동 배치 (35층 이하) - 상봉로 변 : 중층 주동 배치 (25층 이하) - 상봉로1길, 검재로54길 변 : 중저층 주동 배치(17층 이하) - 상봉로 및 검재로54길 방향으로 열린 형태가 주동 배치 -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주동은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이격 배치 - 주동과 주동 사이 보행동선체계와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 마당 계획

- 변경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 사업부지	- 영역별 다양한 형태 및 높이의 주동 배치 - 대상지 중앙 : 상징적 형태의 고층 주동 배치 (35층 이하) - 상봉로 변 : 중층 주동 배치 (25층 이하) - 상봉로1길, 검재로54길 변 : 중저층 주동 배치(15층 이하) - 상봉로 및 검재로54길 방향으로 열린 형태가 주동 배치 -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주동은 공공보행통로로부터 3m 이상 이격 배치 - 주동과 주동 사이 보행동선체계와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 마당 계획

※ 사업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정된 공급평형을 반영한 건축배치(안)을 준용하여 조서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건축물의 최고높이계획(35층)는 변경사항 없음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건축물의 외부형태	공동주택 아파트	- 인접 저층주거지와 조화되도록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 저층부와 고층부 입면 디자인을 특화하고 입체감 부여 - 상봉로변에 배치되는 주동은 가로대응형 입면계획으로 가로활성화 유도 - 공원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입면부는 특화디자인 계획 제시 - 저층부는 지형, 길 등을 활용하여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가로활성화 및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지형, 길, 마당,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가로직출입세대, 전용정원 세대 등을 계획 - 보행자 시각에서 옥탑부가 돌출되어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과 함께 디자인하여 계획함 - 단지경계부 및 단지내 옹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경사를 갖도록 조성 - 단차발생 구간은 지형여건을 활용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계획
재료 및 색채	공동주택 아파트	- 저채도 위주의 색채계획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아파트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지양 - 불필요한 시각 차폐를 지양하고 진입광장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 - 주차진출입구는 건축물과 함께 디자인하여 계획

3)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개방감	남북방향	• 용마산 등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시각적 트임축 확보
조명계획	공동주택 아파트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 조명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아파트	• 상봉로 변 가로대응형 중층 주동 및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모아타운을 고려하여 주변 저층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주변 및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계획 : 변경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환경관리계획 : 변경없음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구분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 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국민주택 규모 주택
기정	합계	1,510	100.0	293	199	94	19.4	100.0	32.0
	전용39㎡	164	10.9	72	72	-	4.8	24.6	-
	전용59㎡	634	42.0	198	127	71	13.1	67.6	24.2
	전용84㎡	622	41.2	23	-	23	1.5	7.8	7.8
	전용104㎡	86	5.7	-	-	-	-	-	-
	전용127㎡	2	0.1	-	-	-	-	-	-
	전용136㎡	2	0.1	-	-	-	-	-	-
변경	합계	1,515	100.0	290	201	89	19.1	100.0	30.7
	전용39㎡	170	11.2	81	81	-	5.3	27.9	-
	전용59㎡	737	48.6	186	120	66	12.3	64.2	22.8
	전용84㎡	557	36.8	23	-	23	1.5	7.9	7.9
	전용104㎡	48	3.2	-	-	-	-	-	-
	전용135㎡	3	0.2	-	-	-	-	-	-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89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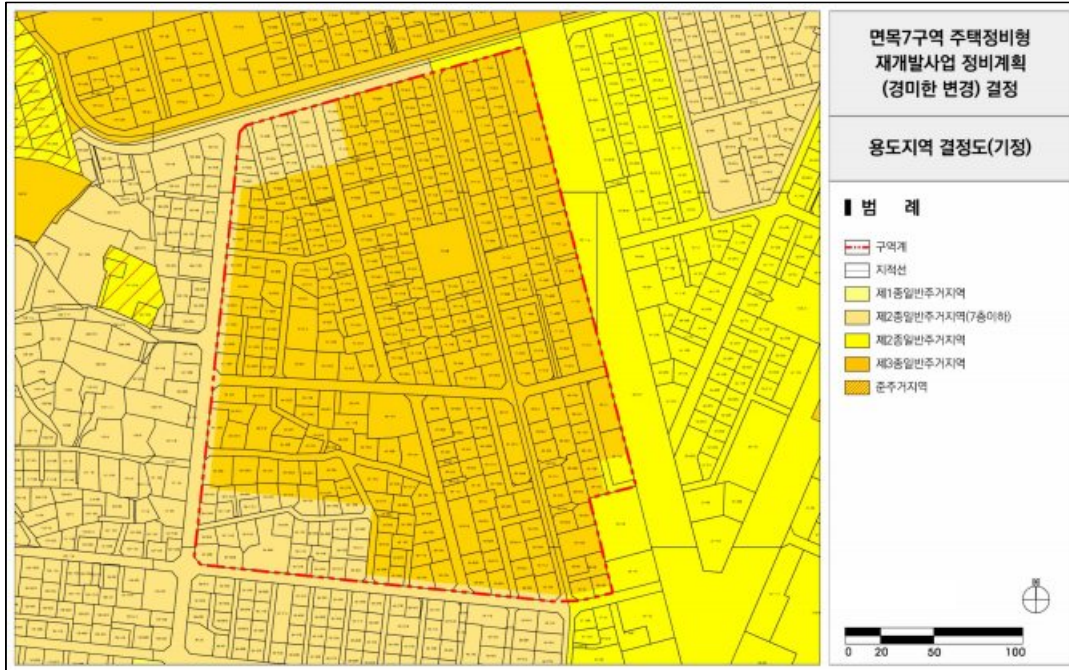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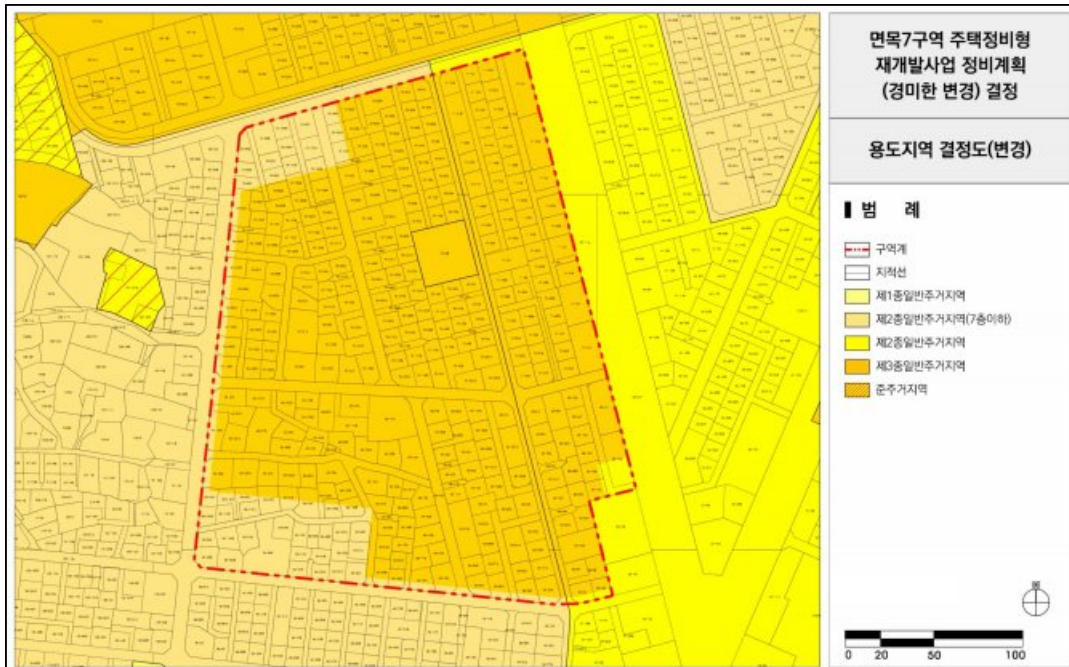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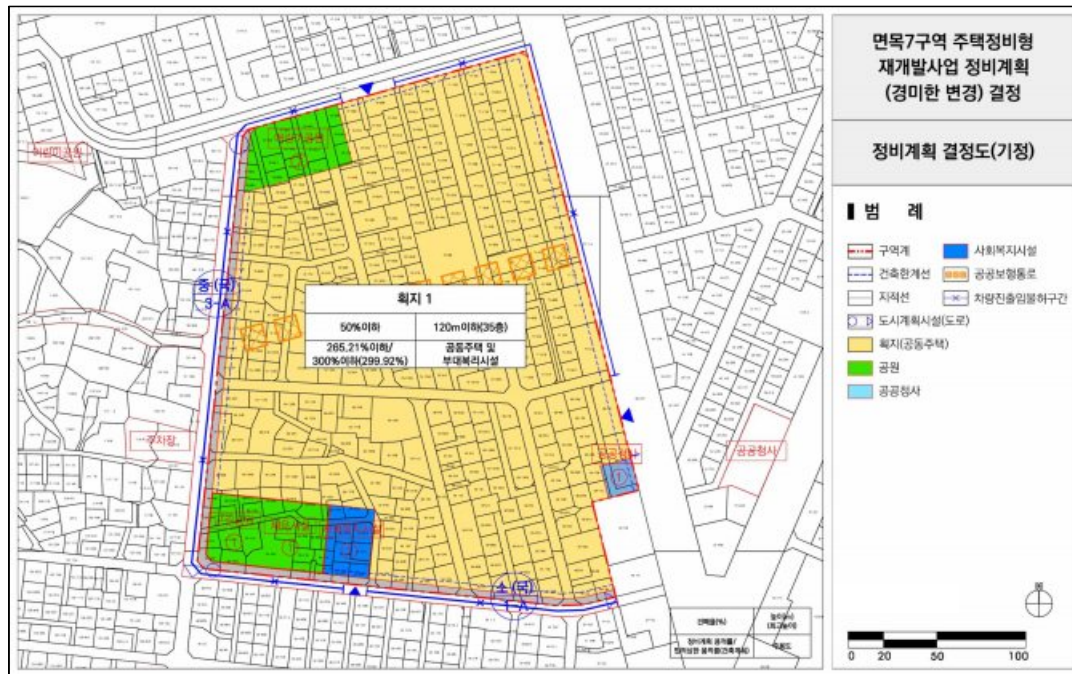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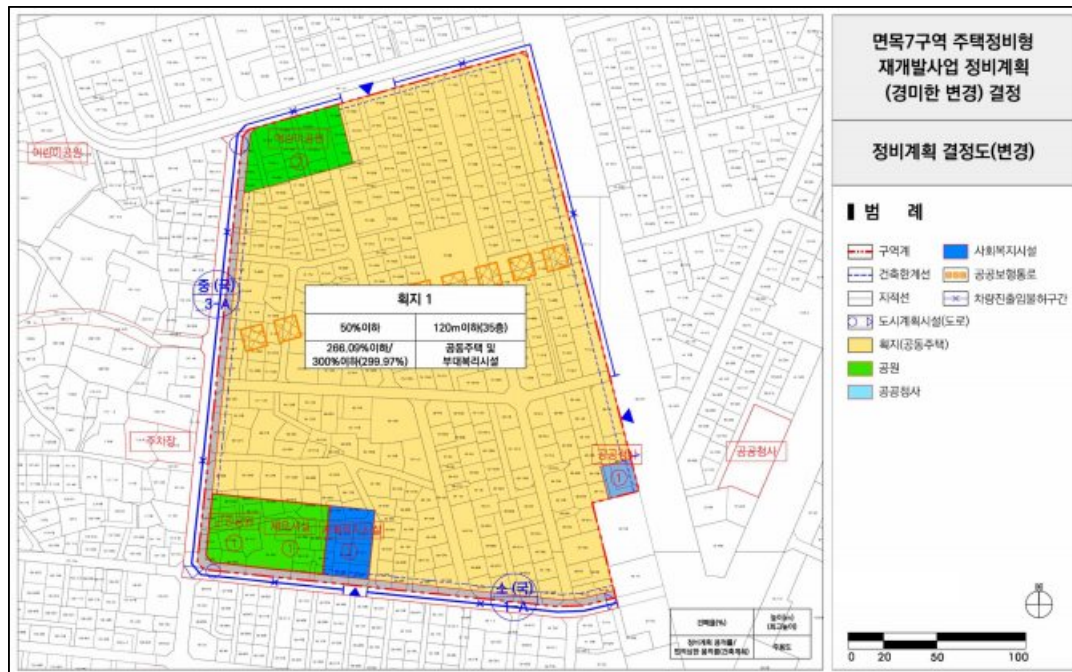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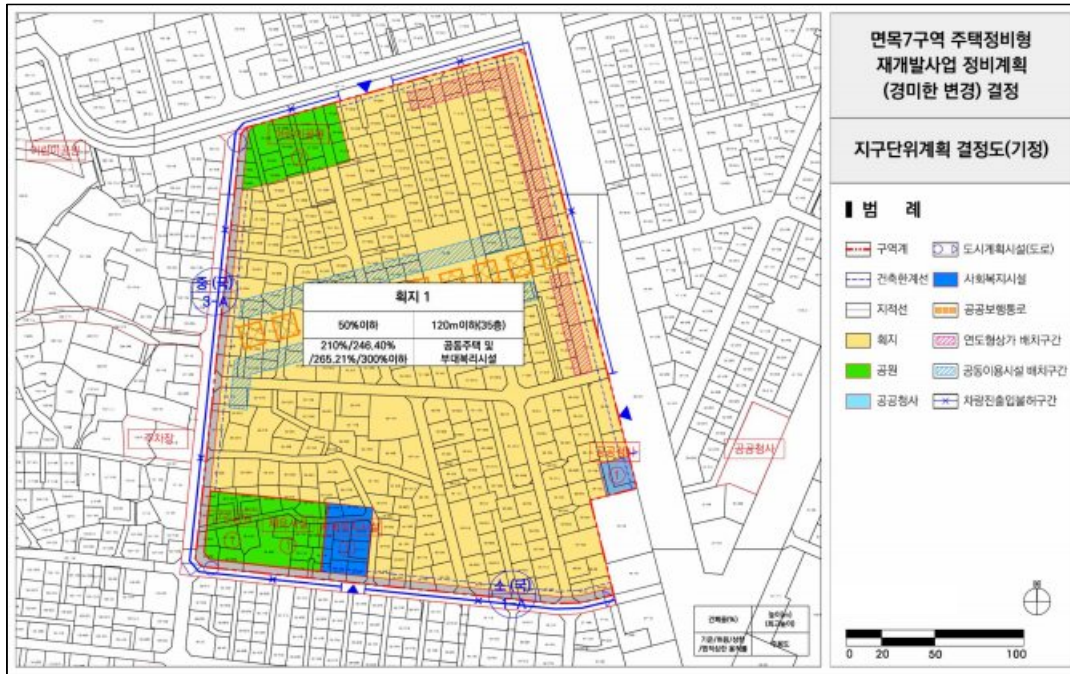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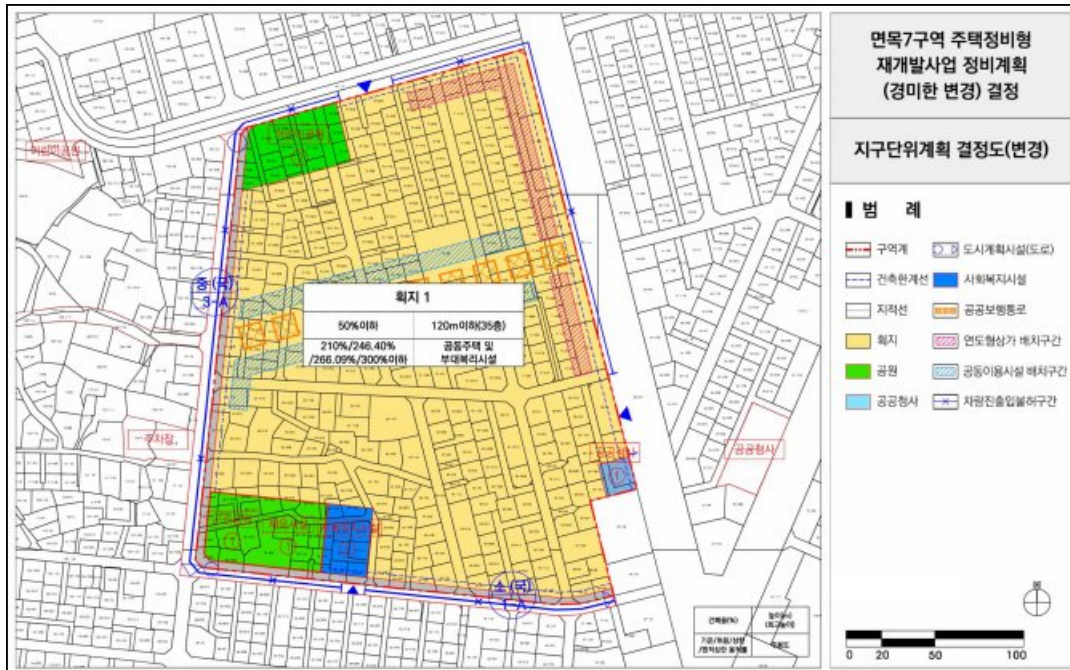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 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가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 사유
1	상봉동 112-33, -32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1길 26-2	건물신축	2026. 8. 13	
2	면목동 496-4,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89	건물신축	2026. 8. 13	
3	신내동 278-57, -193, -206	서울특별시 중랑구139라길 9	건물신축	2026. 8. 13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4-15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154호

도시계획시설[면목7구역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호(2024.01.1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26-32호(2026.3.26.)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된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중 랑 구 청 장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 나. 공원면적 : 근린공원(체육시설 중복결정)-2,600㎡, 어린이공원-1,945㎡
- 다. 결정내용 :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규 공원 조성
- 라.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마.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56)
-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 서류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면목7구역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위치:중랑구 면목동 69-125일대)

구 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m^2)		
계		2,600.00	896.43	1	47.56	2,627.74	43	
공 원 시 설	소 계	896.43	896.43				43	
	기 반 시 설	소계	464.37	464.37			-	
		광장	-	-			-	
		도로	464.37	464.37			-	
	조경시설		-	-			-	
	휴양시설		228.50	228.50			21	
	유희시설		-	-			-	
	운동시설		156.00	156.00			2	
	교양시설		47.56	47.56	1	47.56	2,627.74	-
	관리시설		-	-			20	
녹 지 및 기 타		1,703.57	-				-	
시 설 율 (법정 40%)		$(896.43m^2 \div 2,600.00m^2) \times 100 = 34.48\%$						
건 폐 율 (법정 20%)		$(47.56m^2 \div 2,600.00m^2) \times 100 = 1.83\%$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2,600.00	896.43			47.56	2,627.74	43	
기 반 시 설	계			464.37	464.37					-	
	도 로		부지내	464.37	464.37					-	
휴 양 시 설	계			228.50	228.50					21	
	휴게소	가	부지내	228.50	228.50					-	
	휴게소-1	가-1	〃	(8.70)	(8.70)					-	
	휴게소-2	가-2	〃	(23.50)	(23.50)					-	
	휴게소-3	가-3	〃	(9.00)	(9.00)					-	
	휴게소-4	가-4	〃	(9.30)	(9.30)					-	
	휴게소-5	가-5	〃	(169.00)	(169.00)					-	
	휴게소-6	가-6	〃	(9.00)	(9.00)					-	
	파고라	①	〃	-	-					1	
	바테이블	②	〃	-	-					2	
	야외테이블	③	〃	-	-					3	
	원형의자	④	〃	-	-					2	
	조형의자	⑤	〃	-	-					2	
	등의자	⑥	〃	-	-					10	
	앉음벽	⑦	〃	-	-					1	
운 동 시 설	계			156.00	156.00					2	
	체력단련장	나	부지내	156.00	156.00					-	
	복합체력단련시설	⑧	〃	-	-					2	
교 양 시 설	계			47.56	47.56			47.56	2,627.74	-	
	체육시설	다	부지내	47.56	47.56			47.56	2,627.74	-	
관 리 시 설	계			-	-					20	
	공원안내판	⑨	부지내	-	-					4	
	공원등	⑩	〃	-	-					11	
	CCTV	⑪	〃	-	-					4	
	분전함	⑫	〃	-	-					1	
녹지 및 기타				1,703.57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464.37	-	-	-	
신설	산책로	-	1	2.3	12.5	42.50	진입로	남측 대지경계	산책로 산-2	
신설	산책로	-	2	2.3	139.5	322.10	산책로	산책로 산-3	산책로 산-3	
신설	산책로	-	3	2.0	10.8	31.60	진입로	남측 대지경계	산책로 산-2	
신설	산책로	-	4	2.8	0.6	1.70	진입로	남측 대지경계	하부 건축물	
신설	산책로	-	5	1.5	20.5	31.80	산책로	휴게소-5 가-5	산책로 산-2	
신설	산책로	-	6	1.5	19.4	34.67	산책로	서측 대지경계	산책로 산-2	

붙임 2. 면목7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위치:중랑구 면목동 70-108일대)

구 분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m^2)		
계		1,945.00	1,033.80				42	
공 원 시 설	소 계	1,033.80	1,033.80				42	
	기 반 시 설	소계	345.40	345.40			-	
		광장	-	-			-	
		도로	345.40	345.40			-	
	조경시설		-	-			-	
	휴양시설		235.50	235.50			14	
	유희시설		333.70	333.70			5	
	운동시설		109.70	109.70			4	
	관리시설		9.50	9.50			19	
	녹 지 및 기 타		911.20				-	
시 설 율 (법정 60%)		$(1,033.80m^2 \div 1,945.00m^2) \times 100 = 53.15\%$						
건 폐 율 (법정 5%)		$(0.0m^2 \div 0.0m^2) \times 100 = 0.0\%$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1,945.00	1,033.80					42	
기 반 시 설	계			345.40	345.40					-	
	도 로		부지내	345.40	345.40					-	
휴 양 시 설	계			235.50	235.50					14	
	휴게소	가	부지내	235.50	235.50					-	
	휴게소-1	가-1	〃	(66.60)	(66.60)					-	
	휴게소-2	가-2	〃	(142.60)	(142.60)					-	
	휴게소-3	가-3	〃	(10.40)	(10.40)					-	
	휴게소-4	가-4	〃	(6.10)	(6.10)					-	
	휴게소-5	가-5	〃	(9.80)	(9.80)					-	
	파고라	①	〃	-	-					1	
	조형플랜터	②	〃	-	-					1	
	원형의자	③	〃	-	-					1	
	조형의자	④	〃	-	-					2	
	등의자	⑤	〃	-	-					6	
	유아의자	⑥	〃	-	-					2	
	앉음벽	⑦	〃	-	-					1	
유 회 시 설	계		부지내	333.70	333.70					5	
	어린이놀이터	나	〃	333.70	333.70					-	
	조합놀이대	⑧	〃	-	-					2	
	그네	⑨	〃	-	-					1	
	흔들놀이대	⑩	〃	-	-					2	
운 동 시 설	계		부지내	109.70	109.70					4	
	체력단련장	다	〃	109.70	109.70					-	
	체력단련장-1	다-1	〃	(50.60)	(50.60)					-	
	체력단련장-2	다-2	〃	(59.10)	(59.10)					-	
	복합체력단련시설	⑪	〃	-	-					1	
	체력단련시설	⑫	〃	-	-					3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구조	규모	건축물(m^2)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관 리 시 설	계		부지내	9.50	9.50					19	
	음수전	라	"	9.50	9.50					1	
	공원안내판	⑬	"	-	-					5	
	공원등	⑭	"	-	-					8	
	CCTV	⑮	"	-	-					4	
	분전함	⑯	"	-	-					1	
녹지 및 기타				911.2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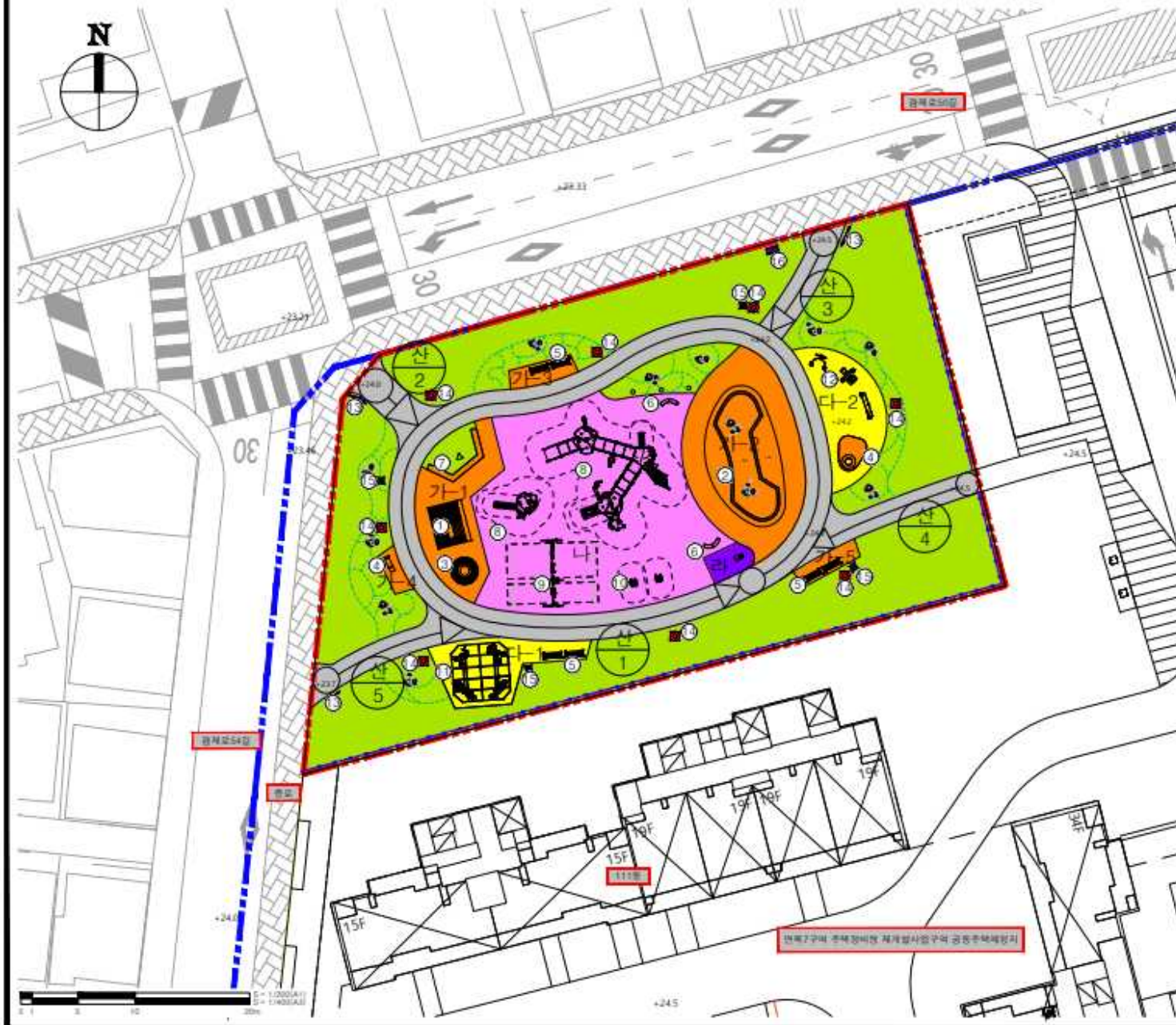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345.40		-	-	
신설	산책로	-	1	2.3	100.5	231.10	산책로	음수전 라	음수전 라	
신설	산책로	-	2	3.0	6.6	22.40	진입로	북측 대지경계	산책로 산-1	
신설	산책로	-	3	2.3	10.7	25.60	산책로	북측 대지경계	산책로 산-1	
신설	산책로	-	4	2.0	15.7	33.80	산책로	동측 대지경계	산책로 산-1	
신설	산책로	-	5	2.0	14.3	32.50	산책로	서측 대지경계	산책로 산-1	

조성 계획도

어린이공원



■ 범례

구분	구분	수량	단위면적	총면적	비고
면적	어린이공원	1,945.00	1,033.80	42	사설면적 53.15%
기타시설	수 계	345.40	345.40	-	
	산-1 산책로-1	231.10	231.10	-	
	산-2 산책로-2	22.40	22.40	-	
	산-3 산책로-3	25.60	25.60	-	
	산-4 산책로-4	33.80	33.80	-	
	산-5 산책로-5	32.50	32.50	-	
주요시설	수 계	235.50	235.50	14	
	가 휴게소	235.50	235.50	-	
	가-1 휴게소-1	(88.60)	(88.60)	-	
	가-2 휴게소-2	(142.60)	(142.60)	-	
	가-3 휴게소-3	(10.40)	(10.40)	-	
	가-4 휴게소-4	(8.10)	(8.10)	-	
	가-5 휴게소-5	(8.80)	(8.80)	-	
	가 휴고과	-	-	1	
	가 휴고과	-	-	1	
	가 휴고과	-	-	1	
	가 휴고과	-	-	2	
주요시설	수 계	333.70	333.70	5	
	나 어린이놀이대	333.70	333.70	-	
	나 휴고과	-	-	1	
	나 휴고과	-	-	2	
주요시설	수 계	109.70	109.70	4	
	다 휴고과	109.70	109.70	-	
	다-1 휴고과-1	(50.80)	(50.80)	-	
	다-2 휴고과-2	(58.90)	(58.90)	-	
주요시설	수 계	9.50	9.50	19	
	다 휴고과	9.50	9.50	-	
	다 휴고과	-	-	5	
	다 휴고과	-	-	8	
주요시설	수 계	911.30	911.30	-	
	다 휴고과	911.30	911.30	-	
	다 휴고과	-	-	4	
	다 휴고과	-	-	1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확대(안 제16조6항)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비치함(☎2094-0348)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1. 안건명 : 202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283,878,677	1,228,208,991	55,669,686	4.53%
일반회계		1,268,292,060	1,213,094,887	55,197,173	4.55%
특별회계		15,586,617	15,114,104	472,513	3.13%
	기타특별회계	15,586,617	15,114,104	472,513	3.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83,426	1,498,220	85,206	5.69%
	건축안전특별회계	3,634,131	3,629,865	4,266	0.12%
	주차장특별회계	10,369,060	9,986,019	383,041	3.84%

- 3.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2094-0492)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구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된 조항 정비를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비(안 제14조)
- 나. 재정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15조)
- 다. 분양료 등 관련 조항 신설(안 제16조)
- 라. 시설의 이용 및 제한 조항 신설(안 제17조)
- 마.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조항 신설(안 제18조)
- 바. 홍보 등 조항 신설(안 제21조)
- 사. 자원봉사자 활용·지원 조항 신설(안 제23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농업과에 비치함(☎02-2094-1062)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디지털포용법」의 제정·시행으로 정보화교육의 정의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수강료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률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 나. 정보화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 근거 조문 정비(안 제14조제3항)
- 다. 정보접근성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관련 근거 법률 정비(안 제17조, 제18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비치함(☎2094-0378)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수용(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공정성 확립
- 공공시설의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 및 공공 위탁의 책임성 강화

나. 국가보훈부 협조 요청사항 수용

- 보훈예우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안 제4조의3)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사용 제한 규정 및 사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일정기간(30일간) 사용허가 금지 규정 신설 (안 제7조)

다.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1년간) 위탁참여 제한 규정 마련 (안 제10조)

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안 [별표1, 4, 5, 6])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육진흥과에 비치함(☎2094-0063)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도시계획시설(봉화산근린공원)사업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종)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62호(2026.6.25.)로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된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중랑구고시 제2020-2호(2020.1.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봉화산근린공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산147-1 등 7필지(전체24필지)

※ 위 대상지를 제외한 17필지는 완료공고 시행완료(중랑구공고 제2023-451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 15,632 m^2 (전체 67,849 m^2)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2)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0. 12. 31.

바. 관계도서 : 생략(중랑구청 공원녹지과 비치, ☎2094-235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2019년 신내동 · 상봉동 · 묵동)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계			67,849	67,849							
1	중랑구 신내동 산158	임야	40	40	서울시						사업 완료
2	중랑구 신내동 779-3	임야	741	741	서울시						사업 완료
3	중랑구 신내동 779-8	전	905	905	서울시						사업 완료
4	중랑구 신내동 779-5	과수원	2,036	2,036	서울시						사업 완료
5	중랑구 신내동 779-6	과수원	5,321	5,321	서울시						사업 완료
6	중랑구 신내동 779	전	281	281	서울시						사업 완료
7	중랑구 신내동 779-4	과수원	6,308	6,308	서울시						사업 완료
8	중랑구 신내동 산147-1	임야	12,556	12,556	서울시						기완료
9	중랑구 신내동 산145-1	임야	2,538	2,538	서울시						기완료
10	중랑구 신내동 산136-15	임야	2,633	2,633	서울시						기완료
11	중랑구 신내동 산136-16	임야	719	719	서울시						기완료
12	중랑구 신내동 산136-17	임야	168	168	서울시						기완료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3	중랑구 신내동 산137-4	임야	3,045	3,045	서울시						기완료
14	중랑구 신내동 산138-8	임야	3,318	3,318	서울시						기완료
15	중랑구 신내동 780-10	임야	4,172	4,172	서울시						기완료
16	중랑구 신내동 780-12	임야	613	613	서울시						기완료
17	중랑구 신내동 산141-4	임야	2,312	2,312	서울시						기완료
18	중랑구 상봉동 산5-2	임야	4,108	4,108	서울시						기완료
19	중랑구 상봉동 산5-3	임야	853	853	서울시						기완료
20	중랑구 묵동 산46-30	임야	2,142	2,142	서울시						기완료
21	중랑구 묵동 산46-15	임야	628	628	서울시						기완료
22	중랑구 묵동 산46-29	임야	6,320	6,320	서울시						기완료
23	중랑구 묵동 121-324	전	18	18	서울시						기완료
24	중랑구 묵동 산43-1	임야	6,074	6,074	서울시						기완료

도시계획시설(용마산근린공원)사업 완료 공고

1. 내무부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종)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78호(2026.7.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중랑구고시 제2019-109호(2019.11.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용마산근린공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423-43 등 9필지(전체 27필지)

※ 위 대상지를 제외한 18필지는 완료공고 시행완료(중랑구공고 제2023-45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용마산근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 13,184.3 m^2 (전체 38,542.3 m^2)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0. 12. 31.

바. 관계도서 : 생략(중랑구청 공원녹지과 비치, ☎2094-235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2019년)

연 번	소재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내용	
계			38,542.3	38,542.3							
1	중랑구 망우동 423-43	과수원	1,844.3	1,844.3	서울시						사업 완료
2	중랑구 망우동 113-32	잡종지	1,941	1,941	서울시						기완료
3	중랑구 망우동 113-38	잡종지	5	5	서울시						기완료
4	중랑구 망우동 113-34	잡종지	79	79	서울시						기완료
5	중랑구 망우동 113-39	잡종지	11	11	서울시						기완료
6	중랑구 망우동 113-35	잡종지	78	78	서울시						기완료
7	중랑구 망우동 113-40	잡종지	14	14	서울시						기완료
8	중랑구 망우동 113-36	잡종지	74	74	서울시						기완료
9	중랑구 망우동 113-41	잡종지	17	17	서울시						기완료
10	중랑구 망우동 113-37	잡종지	113	113	서울시						기완료
11	중랑구 망우동 113-42	잡종지	10	10	서울시						기완료
12	중랑구 망우동 113-13	잡종지	2,134	2,134	서울시						기완료

13	중랑구 망우동 113-2	잡종지	1,939	1,939	서울시						기완료
14	중랑구 망우동 113-33	대지	3	3	서울시						기완료
15	중랑구 망우동 113-30	잡종지	4	4	서울시						기완료
16	중랑구 면목동 산16-15	임야	331	331	서울시						사업 완료
17	중랑구 면목동 산16-16	임야	2,293	2,293	서울시						사업 완료
18	중랑구 면목동 산16-14	임야	7,851	7,851	서울시						사업 완료
19	중랑구 면목동 산16-12	임야	258	258	서울시						사업 완료
20	중랑구 면목동 산16-13	임야	148	148	서울시						사업 완료
21	중랑구 면목동 49-51	학교 용지	8	8	서울시						사업 완료
22	중랑구 면목동 49-52	학교 용지	38	38	서울시						사업 완료
23	중랑구 면목동 49-2	학교 용지	413	413	서울시						사업 완료
24	중랑구 면목동 517	과수원	1,012	1,012	서울시						기완료
25	중랑구 면목동 산32-1	임야	5,814	5,814	서울시						기완료
26	중랑구 면목동 산31-12	임야	1,462	1,462	서울시						기완료
27	중랑구 면목동 산33-3	임야	10,648	10,648	서울시						기완료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청소년시설에 대한 감면 금액, 징수 절차 및 반환 관련 사항 및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시설 종류 및 운영기준 정비(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별표1])
- 나. 사용료·강습료 기준 및 징수·반환 규정 정비(안 제8조 ~ 제8조의2, [별표2])
- 다. 감면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
- 라.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규정 정비(안 제14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과에 비치함(☎2094-6964)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안 제2조)
- 나. 중대범죄인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안 제4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담당관에 비치함(☎2094-0225)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사용자의 본인부담금 잔액을 자동으로 환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좌 정보 부재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낙전에 대해서도 환불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구 세외수입 귀속 근거 마련
(안 제3조의2제3항)
- 나. 상품권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 환급 및 추가 신청기간 규정 신설
(안 제3조의3제1항~제3항)
- 다. 미환불 본인부담금 및 할인보전금의 기관별 세입 조치 근거 마련
(안 제3조의3제4항)
- 라. 시행 전 소멸시효 도래 상품권에 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2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에 비치함(☎02-2094-1295)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중랑구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복지 증진,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지원과에 비치함(☎ 2094-1912)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 구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증원(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530명 → 1,534명
- 집행기관의 정원: 1,494명 → 1,498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6급 이하 4명 순증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530	-					총계		1,534	-				
일반직계		1,520	-					일반직계		1,524	-				
6급이하 소계		1,439	-					6급이하 소계		1,443	-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비치함(☎02-2094-0345)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88-1번지 일대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26. 8. 1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명 칭 :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88-1번지 일대
- 나. 면 적 : 7,816.5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20, 2층

5. 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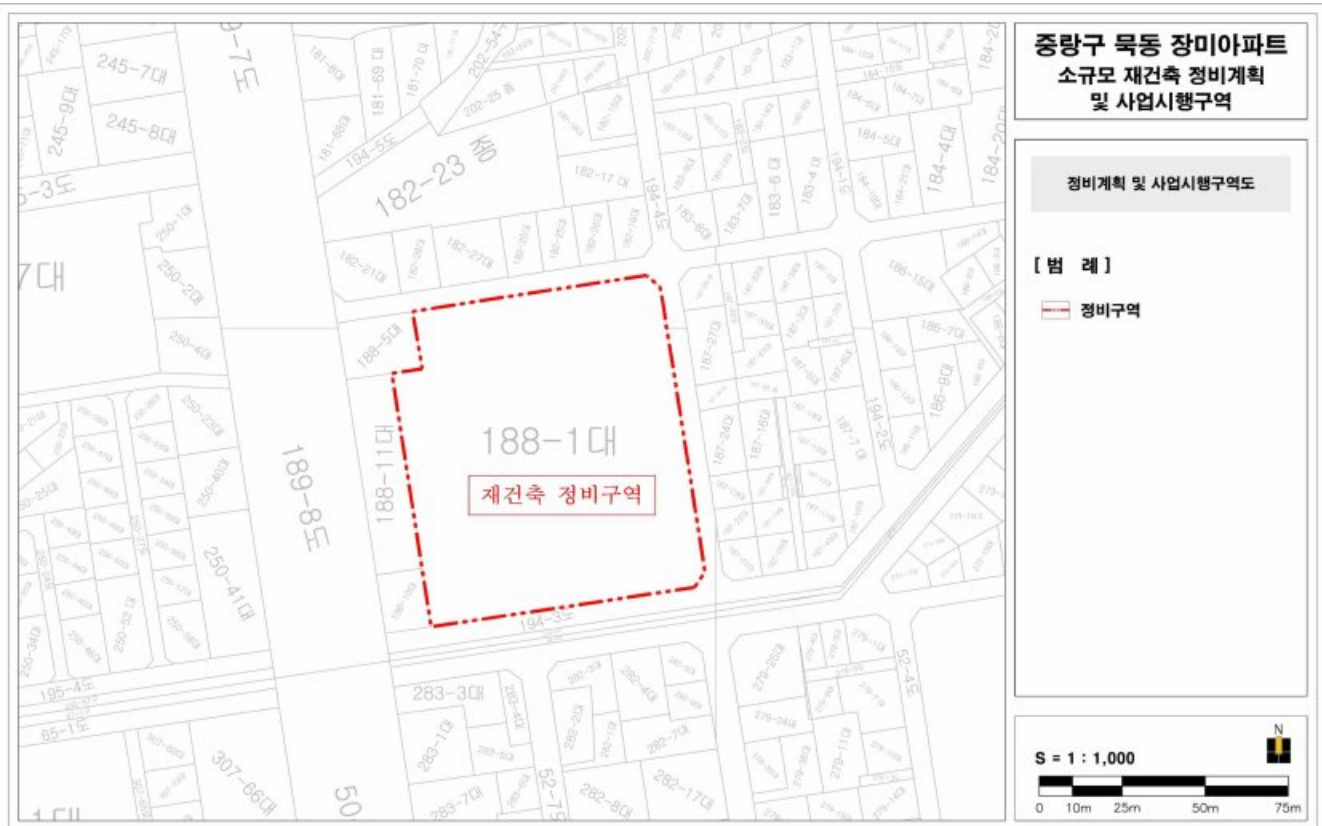
- 가. 조합원 변경
- 나. 정관 변경 등

6.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6. 8. 13. ~ 2026. 8. 27.
-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912)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20, 2층 (조합사무실, ☎02-3789-7525)

7.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공 램 의 견 서

사 업 명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근 거 법 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	
공 램 기 간	2026. 8. 13. ~ 2026. 8. 27.	
공 고 명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의 견 제 출 인	성 명	
	물건지 지번	
	주 소	
	연 락 처	
의견 내용		

2026. 8. .

의견제출인:

(인) 또는 서명

중랑구청장 귀하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6-5번지 일대
- 나. 면 적: 10,094.22㎡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약24개월 이내
- 나.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69, 3층

5. 변경내용

- 가. 조합원 변경
- 나. 조합 임원 연임
- 다. 조합정관 변경(사무소 소재지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검재로 50길 17, 1층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69, 3층

6. 공람기간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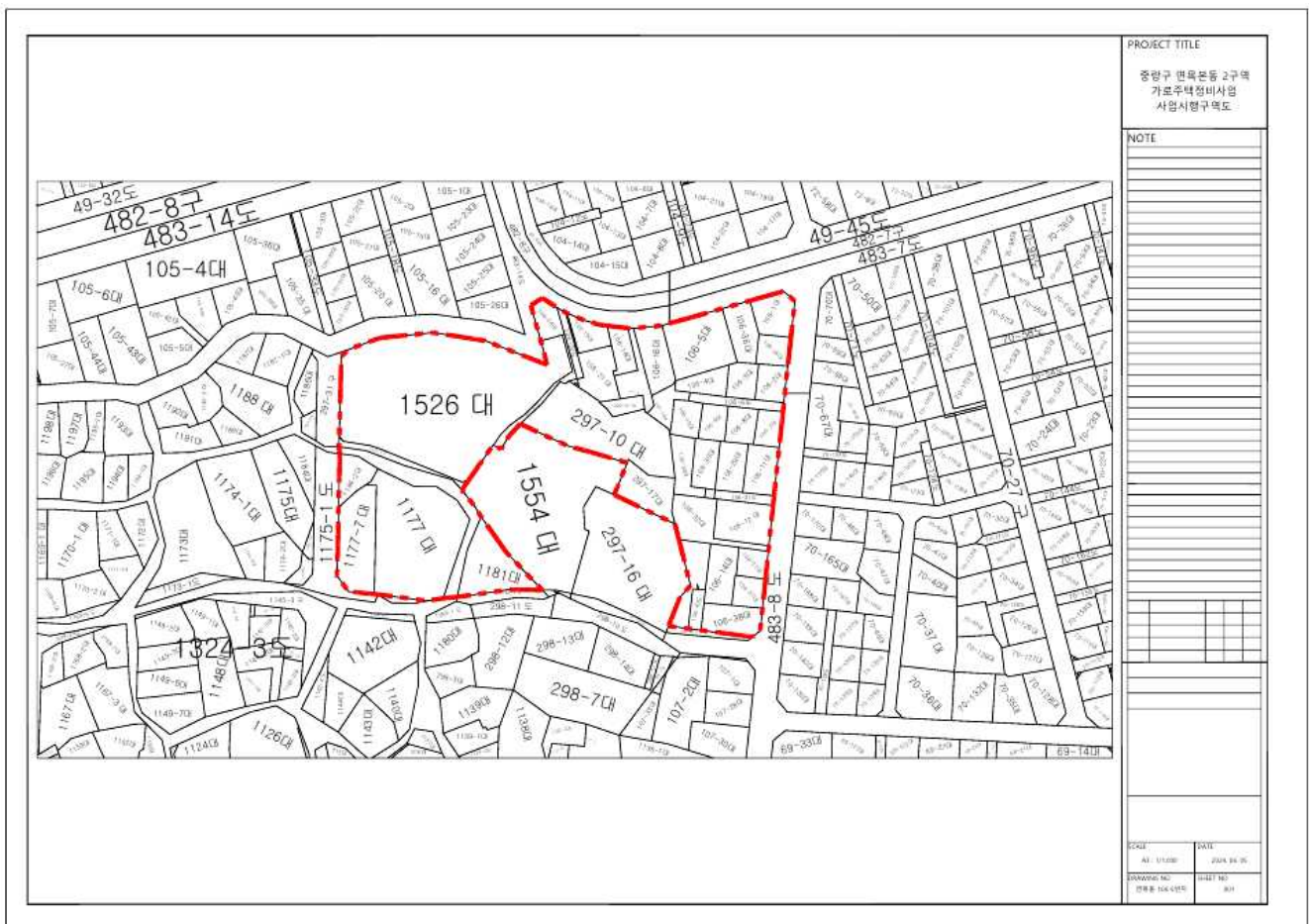
가. 공람기간: 2026. 8. 13. ~ 2026. 8. 27.(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02-2094-69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69, 3층(조합사무실, ☎02-6080-0077)

7.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공 랑 의 건 서

사 업 명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근 거 법 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공 랑 기 간	2026. 8. 13. ~ 2026. 8. 27.	
공 고 명	면목본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의 견 제 출 인	성 명	
	물건지 지번	
	주 소	
	연 락 처	
의견 내용		

2026. . .

의견제출인:

(인) 또는 서명

중랑구청장 귀하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추천요청근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랑구규칙 제927호)

2. 추천요청대상 및 인원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행정재경위원회)

3. 위원회관련사항

가. 위원회 기능 : 구금고 지정관련 평가 및 심의

나. 위원임기 : 구금고 약정체결일 까지

다. 위원자격 :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 비치함(☎02-2094-1243)

2026년 8월 13일

중 랑 구 청 장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 칭: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9-2번지 일대
- 나. 면 적: 9,845.30m²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약24개월 이내
- 나.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의 명칭: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31, 602호

5. 변경내용

- 가. 조합원 변경
- 나. 조합 임원 연임
- 다. 조합임원 추가 선출 등

6. 공람기간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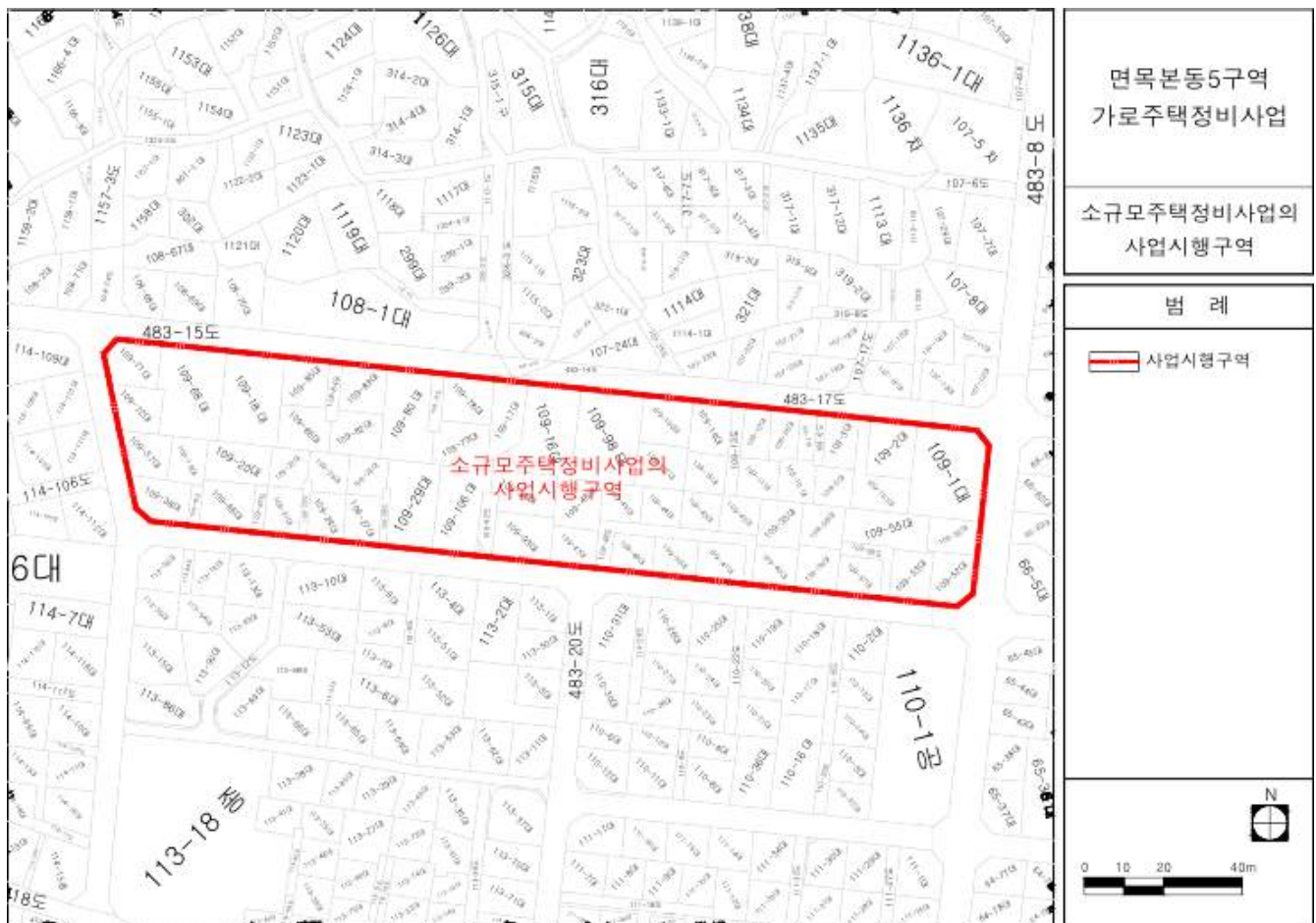
가. 공람기간: 2026. 8. 13. ~ 2026. 8. 27.(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02-2094-69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31, 602호(조합사무실, ☎02-437-7700)

7.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공 램 의 건 서

사 업 명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근 거 법 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공 램 기 간	2026. 8. 13. ~ 2026. 8. 27.	
공 고 명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의 견 제 출 인	성 명	
	물건지 지번	
	주 소	
	연 락 처	
의견 내용		

2026. . .

의견제출인:

(인) 또는 서명

중랑구청장 귀하

중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며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나.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을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위 치	규모(㎡)	운영인력
중랑청소년문화 예술창작 2센터	신내로 267, 2층 (묵동, 에이트플레이스)	324.9	총 3명(센터장1, 직원 2)

나. 위탁내용 :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운영·관리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청소년과에 비치함(☎ 2094-6964)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일부개정 이유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관련 상위법 인용 및 용어·자격기준 정비(안 제1조~제18조)
- 나. 위원 의무, 해촉 및 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2조~제14조, 제18조)
- 다. 주민자치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 라.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치회관 운영기준 정비(안 제19조의3, 별표 1)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을협치과에 비치함(☎2094-0442)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라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모집인원 : ○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교통, 토목, 법률

3. 위촉기간 : 2026. 9.19. ~ 2026. 9.18.(2년)

4. 위원회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 1) 4년제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2)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 5) 해당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1)부터 5)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응모기간 및 접수

- 응모기간 : 2024. 8.13.(목) ~ 8.24.(월) 18:00 까지
 - 접 수 처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우편 및 e-mail, 방문접수
 - 주 소 : (우)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 이메일 : kjy919@jn.go.kr
-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e-mail(본인확인 필수),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7.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 ※ 제출서류 양식은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s://jungnang.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중랑소개 → 중랑소식 → 공고/고시)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타 시·도 및 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02-2094-2176)으로 문의. 끝.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일부개정이유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제공 및 아이디어 제공자·문답·행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를 확대하고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장바구니를 제작·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제4항)
- 나. 아이디어 제공, 이벤트 참여자에게 보상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2항)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예 비치함(☎2094-1943)

2026년 8월 13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85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일부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및 행사폐기물 감량계획의 수립·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방법(안 제15조의2)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소행정과 비치함(☎2094-1954)

2026년 8월 13일

중랑구청장